고흥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1년 7월 27일

고흥군의회의장 송 영 현

고흥군의회 훈령 제2021-7호

고흥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

고흥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〕

고흥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

부서별	분 장 사 무 명	전 결 권 자		의장
		팀장	과장	
공 통	1.~5.(현행과 같음)			
의사팀	1.~9. (현행과 같음)			
	10. 회의록에 관한 사항			
	가.~나. (현행과 같음)			
	다. 회의내용의 기록		○	
	라. (현행과 같음)			
	22. 본회의장 의석 배정			○
	23. 고문변호사 위·해촉 관리			○
	24. 의회 자료실 운영	○		
	25. 보안업무 관리		○	
	26. 의회 청사관리		○	
	27. 의정 자문위원회 운영			○
의정팀	1. (현행과 같음)			
	2. (삭제)			
	3.~4. (현행과 같음)			
	5. 회의실 방송시스템 관한 사항			
	가. 회의장 회의내용 녹음·녹화·촬영 및 중계방송 관한사항		○	
	나. 본회의장, 소회의실, 상임위원회의실 등 모든 방송시스템에 관한 사항		○	
	6.~11. (현행과 같음)			
	12. (삭제)			
	13~22 (현행과 같음)			
	23. 의정활동 사진·영상기록 게시 관리	○		
	24. (현행과 같음)			
	25.~27. (삭제)			
전문위원실	1.~10. (현행과 같음)			